

새로운 미래, 경기도 광고 신청사에서 만나요!



경 기 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의용소방대원 복무관리 지침(생활방역 수칙) 준수 철저

1. 관련근거

- 가. 코로나19긴급대응반-1239('22.4.15)호"코로나19 대응 소방공무원 관리지침('22.4.18.)
- 나. 중앙방역대책본부('22.4.25)"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(6판)
- 다. 코로나19긴급대응반-1939('22.6.28)호 "코로나19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(생활방역 수칙) 철저 준수 안내"

2.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'22.4.18.)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일부 해제(5.2.) 이후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, 최근 전국 소방공무원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연속 증가* 하고, 집단 감염도 2건(3교대 → 2교대 전환 1건 포함) 발생하였습니다.

* (일평균) 6월 1주 13명 → 6월 2주 12명 → 6월 3주 15명 → 6월 4주 18명

<집단감염 사례>

- (○○도 ○○소방서) ○○직원 임상증상으로 ○○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한바 "양성" 판정으로 구조구급센터 전 직원(24명) 검사 결과 같은 팀 5명 양성
→ BCP 계획에 따라 3교대를 2교대 전환(6.23~29)함, '22.4.24 이후 BCP 작동
- (○○도 ○○소방서) '긴급구조종합훈련'평가에 사전 훈련(6.20~22) 및 평가(6.23)에 참여한 2개 소방서 직원 120명 중 임상증상 직원과 밀접접촉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(6.26~27) 최종 12명 양성 판정 받음

3. 이에, 본부(북부) 각 부서 및 소방관서에서는 **훈련, 워크숍, 각종 행사 시 아래의 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- 모든 실내, 50인 이상의 집회 및 공연(스포츠 경기) 관람 시, 실외에서 2m(최소 1m)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
-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
-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
-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,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. 끝.